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되었고,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남부·북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을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단서 중 “경기도”를 “경기도남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정급적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		135,809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31,894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15,359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6,359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8,639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비고

1.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3189만4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863만9천원으로 한다.
2.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863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15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635만9천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9863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198만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